

<별지 제23호서식>

감 사 보 고 서

본인 등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시천주복지재단의 2016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도 12월 31일로 종결되는 회계 연도의 업무집행 내용과 법인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 결산서의 각항은 다음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다 음

1. 비품관리대장은 필히 비치할 것
2. 지정후원금의 경우에는 그 사용결과를 후원자에게 통지할 것

2017년 02월 23일

사회복지법인 시천주복지재단

감 사 주 영 채



감 사 이 영 이



사회복지법인 시천주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